KOSHA GUIDE

C - 80 - 2013

비를 갖추어야 한다.

- (바)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하여 근골격계 및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사) 안전모, 안전대, 구명조끼 등 근로자의 개인보호구를 점검하고 작업 전에 보호구의 착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, 작업 중 착용여부 및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
- (2) 사용예정 가설장비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정상적인 장비로 교체하거나 정비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.
- (3) 위험기계·기구의 방호장치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.
- (4) 작업장 내 고압 송전선로, 전기·통신케이블 등 장해물 현황을 사전에 조사 하여 이설하거나 방호시설을 갖추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5) 개구부나 외주부 등 떨어짐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, 추락방지망 등 떨어짐 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하고,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떨어짐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6) 작업시작 전에 작업통로, 안전방망,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의 설치상태와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7) 작업장 내 공구 및 자재를 정리정돈하여 맞음·비래 등의 재해를 예방하여 야 한다.
- (8) 벤트, 강아치교에 사용되는 부재의 재질 및 용접상태, 볼트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9) 중량부재를 크레인으로 인양할 때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부재에 인양용 러그(Lug)를 설치
- (나) 인양용 와이어로프를 부재의 2지점 이상에 결속